

■ 목 차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모 그룹의 중국 의료사업 진출 관련 법률 타당성 검토.....	1
한국 모 그룹의 중국 자회사 구조조정 용역 중 법률 부분 자문.....	1
한국 법인 중국 자회사의 장기 가공도급계약 체결 관련 자문.....	2
한국인을 대리하여 미약밀수 형사소송 관련 자문.....	2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관련 자문.....	3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재투자 관련 자문.....	4
중국 법인과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의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4
[베트남] 롯데호텔 베트남 리전드호텔 인수 자문.....	5
[러시아] 메리츠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부동산특별자산펀드 회사에 대한 실사 및 관련 자문.....	6
홍콩 법인을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내 리스회사 설립 참여 관련 자문.....	7
국내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연해주 내 식품생산 JV 설립 관련 자문.....	7
국내 목재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하버롭스크주 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관련 자문.....	8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지분에 의한 외상투자기업 출자 규정 시행.....	9
[베트남]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2).....	11
[러시아] 러시아 담보권 실행절차 개정.....	16

■ 최신 해외 정보 ■

[중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기업채권 발행과정에서의 신용 강화.....	20
--	----

중국 지분을 이용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규정 발표.....	20
증권결산보증금제도 통일.....	21
[러시아] 2012년 11월 말부터 위임장 없이도 타인 차량 운전 가능해져.....	22
최저임금 월 5,205루블로 인상.....	22
2015년 1월 1일 이후 러시아 국민의 신분증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 예정.....	22
러시아연방 정부 2018년까지의 기본정책 방향 발표.....	2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모 그룹의 중국 의료사업 진출 관련 법률 타당성 검토

지평지성은 한국 모 그룹을 대리하여 중국 의료사업 진출의 법률 타당성 검토와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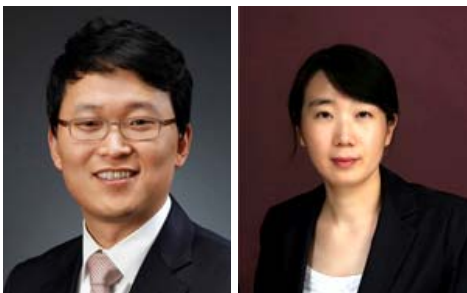
주성훈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모 그룹의 중국 자회사 구조조정 용역 중 법률 부분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모 그룹의 중국 자회사 구조조정 용역 중 법률 부분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 중국 자회사의 장기 가공도급계약 체결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 중국 자회사의 장기 가공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인을 대리하여 마약밀수 형사소송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인을 대리하여 마약밀수와 관련한 형사소송을 자문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웅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을 대리하여 중국 자회사의 지분양수도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최홍화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항소심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재투자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한국 법인의 중국 자회사를 대리하여 중국 재투자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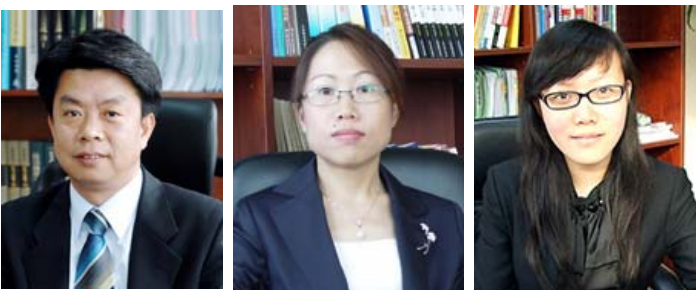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중국 법인과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의 기업결합신고 관련 자문

지평지성은 중국 법인과 일본 법인을 대리하여 한국의 기업결합신고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염동 중국변호사

부응 중국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베트남 ■

롯데호텔, 베트남 레전드호텔 인수 자문

지평지성은 롯데호텔을 대리하여 베트남 호치민시 특1급 호텔 'Legend' 인수 자문을 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 롯데호텔, 베트남에 해외 2호점...레전드호텔사이공 오픈 - 한국경제(2013. 3. 5.)

[담당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정정태 변호사
호치민시티 현지법인장



이훈 미국변호사



Bui Tran Dang Khoa
베트남변호사



Tran Thi Phuong Trang
베트남변호사

■ 해외업무 사례 - 러시아 ■

메리츠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카자흐스탄 부동산특별자산펀드 회사에 대한 실사 및 관련 자문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정되어 운용 중인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의 지위를 메리츠자산운용 주식회사가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실사 및 자산운용회사의 지위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강재영 변호사



허중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홍콩 법인을 대리하여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내 리스회사 설립 참여 관련 자문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내 리스회사 설립 참여와 관련하여 주주간계약을 포함한 기타 관련 문서의 검토 및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국내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연해주 내 식품생산 JV 설립 관련 자문

국내 식품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연해주 내 식품생산 JV 설립 관련 주주간계약을 포함한 기타 관련 문서의 검토 및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현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국내 목제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관련 자문

국내 목제회사를 대리하여 러시아 하바롭스크주 내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류혜정 변호사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남유선 미국변호사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지분에 의한 외상투자기업 출자 규정 시행



(법무법인 지평지성 부응 중국변호사)

지분에 의한 출자¹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2005년의 개정 회사법에서 비화폐성 재산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도로 규정되어 있었을 뿐 더 자세한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2009년에 중국 공상총국에서 「지분출자등 기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지만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공상총국 외설립 인허가기관으로서 상무부서의 인허가 내용이 핵심인데 반해 관련 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사실상 지분에 의한 출자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상무부는 2012년 9월 21일에 「상무부 외상투자기업 지분에 의한 출자 관련 잠행규정」(이하 '잠행규정')을 반포하여 중국 경내기업의 지분을 이용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사기관,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명시적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잠행규정'의 시행으로 외상투자기업은 중국 내국인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분에 의한 출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잠행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분으로 출자하는 경우 그 심사기관은 국가 상무부와 각 지방 성급 상무부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분으로 출자하는 경우 인허가 심급은 최소 성급 상무부서로 성급 이하에는 인허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는 바, 이러한 조치는 최근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심급을 성급 이하를 포함한 지방 정부로 이양하고 있는 추세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

¹ 본문에서는 '지분투자'와 구분하기 위하여 '지분에 의한 출자'로 표현하였으며, '지분에 의한 출자'라 함은 출자 수단으로써 현금, 현물과 같이 지분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는 중국 정부가 비록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신중하게 운용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외 출자 가능한 지분에 대하여 '잠행규정'에서는 '관리방법'에서 정한 등록자본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또는 동결되거나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양수도가 금지된 등 지분으로 출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그대로 둔 외, 이러한 제한 사유에 추가하여 연도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외상투자기업 및 부동산개발기업, 외상투자성기업,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VC)의 지분은 출자에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지분에 의한 출자 방식을 남용하여 중국법상 외국인의 투자 제한 영역에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행규정'에서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 지분을 이용한 출자 후 출자에 이용되는 지분의 소재기업 및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 등 관련 기업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상 제한류로 분류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내자기업의 지분으로 외국인과 함께 출자하여 중외합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중외합자기업이 기존 내자기업의 주주로 변경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잠행규정'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 관련 규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재투자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외 지분을 이용한 출자 시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의 등록자본금과 관련하여, 외채 한도 산정 시 등록자본금 중 지분출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분출자를 받은 기업의 등록자본금이 100만 달러이고, 지분 출자 부분이 20만 달러에 해당한다면 $100 - 20 = 80$ 만 달러를 등록자본금으로 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총액을 역산하고, 다시 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외에 변호사 업무와 관련하여 '잠행규정'에서는 인허가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로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필수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지분을 이용한 출자에 대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2)



(법무법인 지평지성 정정태 변호사 · 베트남 호치민시티 현지법인장)

[5호 베트남 논단] [상가 임차권의 대항력 \(1\)](#)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베트남 법령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자와의 관계 외에는 상가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력이나 비용상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계약적인 장치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일반적인 임차인 보호 조항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았음에 대해 진술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대 목적물의 권리증서를 미리 확인하는 실사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설정되는 담보권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므로, 선순위 권리자 유무의 확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저당권 설정의 선후관계가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에 공증을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담보 설정하는 등의 처분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밖에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 및 부속물 매수에 관한 권리의무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 조항을 임대차계약에 명시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임의 처분(저당권 설정의 경우는 제외)하거나 강제집행, 파산 등으로 건물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은 제3취득자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임차권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2) 부동산 저당권 설정의 어려움과 권리증서의 점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의 처분 등에 대비하여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임대 목적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등록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의 실행 방법은 우선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원 경매에 의합니다(베트남 민법 제336조, 제355조). 이로 인하여 저당권 실행 방법으로써 저당권자가 피담보 재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일종의 유저당)를 저당권설정계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기타 비용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피담보 채무로 하여 유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있으면 건물 소유자 변동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저당권 실행으로써 임대 건물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영업중인 금융기관(Credit Institution)에 한해 허용됩니다(토지법 제110.2조 (d)항, 제111.1조 (b)항). 따라서 금융기관이 아닌 임차인은 임대 건물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임대인이 건물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소유권증서(토지사용권증서와 통합 관리되는 경우에는 통합권리증서) 원본을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의 권리증서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으면, 임대인이 건물을 처분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거래 실무상으로는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을 수 없는 일반 회사가 해당 건물과 토지의 권리증서 원본을 점유·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증서의 분실을 사유로 재발급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할기관(성 정부의 자원환경국(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은 권리증서 재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재발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권리증서 원본의 점유 보관 역시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담보 설정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금융기관으로 제한되지만, 부동산이 아닌 다른 재산의 담보권 취득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은행예금이나 회사 지분 등 자산 가치가 높고 환가성이 좋은 재산에 대해 담보권(질권)을 설정받는 것도 안전한 권리 보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록되어 관리되는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담보설정계약 자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저당권)의 등록은 성 정부 단위의 자원환경국에서 관할하지만, 기타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계약의 등록은 자산거래등록소(Center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Transaction)에서 관할합니다. 이렇게 담보 등록을 하게 되면,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서 피담보 자산을 직접 취득하거나 이를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담보 설정할 다른 주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고, 거래 실무상으로도 임대인이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면서까지 임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입니다.

(4) 은행 보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의무에 대해 신용도 높은 은행이 보증(Bank Guarantee)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베트남의 거래 관행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제약이 있으므로, 담보의 방법으로는 은행 보증이 가장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은행은 보증 제공의 대가로 높은 수수료나 물적 담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은행이 요구하는 수수료 금액이 너무 커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은행에 임대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제공(저당권 설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용이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은 금융기관이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제약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 건물과 부지에 이미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이 또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임대료의 분납

앞서 본 것과 같이 임대 건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후순위 저당권자에 대해 대항력을 가지며, 임대 건물과 부지를 은행 앞으로 담보 제공하고서 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의 의무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금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 시행사들은 사업 초기(토지사용권 취득 단계)에 이미 토지뿐만 아니라 그 지상에 추후 건축될 일체의 건물과 시설물을 포괄적으로 담보로 제공(설정)하고 개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의 변동 시 임차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 규모를 줄이고(예를 들어 3개월치 임대료) 임대료를 일정 기간(예를 들어 3개월)마다 분할하여 지급하며, 가급적 해당 기간 만료일에 후불로 지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최근 베트남 부동산 시장 현황을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자 시행사들이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에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 전액을 미리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예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제28.1조에 따라 기성 건물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으며, 부동산사업법 제28.2조에 따라 부동산중개소(Real Estate Trading Floor)를 통해 거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완공 전 상태에서는 임대인과 장래 대상 건물 완공시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임대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을 합의하는 취지의 가계약 또는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 형식의 합의(통상적으로 'Reservation Agreement'라 칭합니다)를 체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상태에서는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으므로, 임대료 지급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지급하거나,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에스크로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이 때에도 남은 임대기간 동안의 대항력 기타 실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움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또한 장래 대상 건물이 완공된 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형식적으로나마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러시아 담보권 실행절차 개정



(법무법인 지평지성 [채희석 변호사](#))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

그간 러시아의 담보제도는 규정의 모호함과 조항간의 상충,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 담보권 실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의 많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중대한 제약사항이 되어 왔고 당국 역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담보제도의 개선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2011년 12월 6일 「담보권 실행절차의 개선을 위한 일부 법률의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6 декабря 2011 г. № 405-ФЗ «О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част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порядка обращения взыскания на заложенное имущество»)」(이하 '개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담보권 실행절차가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 연방법률에 따라 내용이 개정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담보권에 관한 연방법률(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9 мая 1992 г. № 2872-1 «О залоге»)」
- (ii) 「공증에 관한 기본법(Основы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отариате от 11 февраля 1993 г. № 4462-1)」
- (iii) 「민법(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iv) 「부동산에 대한 권리 및 그 거래의 등기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1 июля 1997 г. № 122-ФЗ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прав на недвижимое имущество и сделок с ним»)」
- (v) 「저당권(부동산 담보권)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16 июля 1998 г. № 102-ФЗ «Об ипотеке (залоге недвижимости»)」
- (vi) 「세법(Налогов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개정법은 등기수수료의 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세법 개정사항(개정법 제7조)을 제외하고 공포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의 담보제도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①
- (i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②
- (iii) 러시아 담보제도에 대한 개괄적 검토 ③
- (iv) 러시아법상 부동산 담보권 실행제도의 개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

개정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로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внесудебное обращение взыскания)에 있어서 공증인의 역할 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전에 공증인의 역할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담보권설정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는 수준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은 기본적으로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바탕으로 담보권설정자의 협력에 따라 진행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담보권설정자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담보권의 실행에 협력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공증인으로부터 집행서명(исполнительная надпись)을 받아 담보권설정자의 협력 없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 대신에 담보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법에 따라 담보권자는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관한 계약의 미이행이 아닌 피담보채무의 미이행 혹은 불완전이행 자체를 근거로 공증인에게 집행서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담보권자는 공증인의 집행서명을 근거로 집행관에게 담보물의 공매나 담보권자에 대한 인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공증인의 집행서명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 의무 대상의 조정

일반적으로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약정을 통하여 담보권 실행방법(법정 혹은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을 정할 수 있지만, 관계법령은 담보물의 성격이나 담보권설정자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하여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우선 (i) 개인이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ii) 담보권의 설정에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법정 외에서의 담보권 실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종전에는 담보권 설정에 제3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한회사(общество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지분에 대한 담보권을 법정 외에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으나, 개정법으로 인하여 유한회사 지분에 대한 담보권 실행이 용이해졌습니다.

한편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로 새로이 추가된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여러 순위의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고 각각의 담보권이 정하고 있는 담보권 실행절차가 서로 다른 경우와 (ii) 동일한 담보물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이 상이한 동순위의 담보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야 합니다.

담보물의 환가절차

개정법은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가 담보권설정계약을 통하여 담보물의 환가절차를 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산의 경우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는 사적 경매절차를 통하여 담보물을 환가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적 경매절차(торг)는 담보권자의 감독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집행관의 감독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공매절차(публичный торг)와 서로 구분됩니다. 다만 동산인 담보물을 다른 방법, 예를 들면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의 취득 혹은 경매 절차 없이 특정한 제3자에 대한 담보물 처분을 통한 담보물의 환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개정법에 따르면 부동산은 사적 경매절차나 담보권자에 의한 담보물의 취득을 통해서 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경매절차 없이 특정한 제3자에게 담보물을 처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에도 담보물의 환가 절차는 담보권자와 담보권설정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의 담보권 실행만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공매절차뿐만 아니라 사적 경매절차 등을 통한 담보물의 환가도 허용됩니다.

첨언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체제가 개편된 것이 20여 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제도가 상대적으로 불안합니다. 이에 따라 민법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에 대해서도 개정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특히 대통령 산하 민사법제의 통합 및 개선에 관한 자문위원회(Совет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по кодификации и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граждан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에 의하여 2009년 10월 7일 채택된 「러시아 민사법제 발전에 대한 기본구상(Концепция развития гражданск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РФ)」을 통하여 여러 방향에서 민법 및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기업채권 발행과정에서의 신용 강화

지난 10월 9일,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기업채권 발행과정에서의 신용 강화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통지에 의하면 채권발행을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신용서비스기관에서 발행한 기업의 신용기록 또는 신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신용기록 또는 신용보고서의 발행은 성급 발전과 개혁위원회의 담당자가 직접 해당 신용서비스기관에 요청하여 진행하여야 하고 필요 시 채권발행기업의 협조를 받을 수는 있으나 채권발행기업 또는 주간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는 채권발행기업의 신용은 직전 3년의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상황에 의지하여 평가하였지만, 이 규정의 발표로 신용서비스기관에서 작성한 신용보고도 채권발행 관련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비록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는 채권발행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신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의 상업신용시스템이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고 시작단계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신용서비스기관의 신용보고만으로는 이 통지에서 정한 채권발행기업의 정확한 신용기록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지분을 이용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출자 규정 발표

지난해 10월 22일부터 「외상투자기업 지분출자 잠행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가 지분을 출자수단으로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 소재지 성급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은 소유권에 다툼이 없어야 하고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양도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지분은 출자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 소재기업(이하 "지분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체납한 경우
- 2)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 3) 출자로 이용될 지분이 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
- 4) 지분기업의 정관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
- 5) 직전 연도 외상투자기업 연도검사 불참 또는 통과되지 아니한 경우
- 6) 부

동산기업, 외상투자성회사, 외상투자창업(지분)투자기업의 지분 7)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지분을 양도하여야 하지만 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이 외 출자로 이용되는 지분에 대하여 반드시 적법하게 설립된 중국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아야 하고 투자기업의 모든 주주의 지분출자 금액과 기타 현물출자 금액의 합계는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산보증금제도 통일

지난해 11월 13일, 「증권결산보증금 관리방법」이 발표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상해증권거래소와 심천증권거래소는 서로 다른 결산보증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즉 상해증권거래소는 '청산결산거래준비금' 제도를 시행하고 심천증권거래소는 '결산상호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2가지 제도는 명칭, 근거, 비용수취기준 등 방면에서 상이하여 결산 당사자의 관리원가를 증가시키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위 규정은 위 증권거래소들의 상이한 보증금제도를 통일하였습니다. 위 규정 시행 후 심천의 권리증서이행보증금, ETF구매이행보증금, 상해의 권리증서가격차액담보금 등은 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중국증권등록결산회사에서 통일적으로 관련 계좌를 말소하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위 규정의 시행으로 결산보증금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자금의 이용률과 수익률도 대응하여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러시아 ■

2012년 11월 말부터 위임장 없이도 타인 차량 운전 가능해져

2012년 11월 12일자 러시아정부령 제1156호에 따라 「도로교통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령」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차량 소유주가 발급한 위임장 없이도 차량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에서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소지해야 하는 서류는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증서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월 5,205루블로 인상

「최저임금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No. 82-FZ, 2000년 6월 19일 제정, 2012년 12월 3일 개정) 개정으로 인해 2011년 6월 1일 이후 줄곧 월 4,611루블이었던 최저임금이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월 5,205루블로 인상되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러시아 국민의 신분증 전자카드 형태로 발급 예정

러시아연방 이민청이 작성하여 입법 예고한 「러시아 국민 개인신분 확인 기본서류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2015년 이후부터는 현재의 여권 형태의 신분증을 대체하여 전자카드 형태의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될 예정이며, 14세 이상의 러시아 국민은 모두 발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전자카드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한편, 기존의 여권형태의 신분증도 2025년 1월 1일까지는 전자카드 신분증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러시아연방 정부 2018년까지의 기본정책 방향 발표

2013년 1월 31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2018 러시아연방 정부 기본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정책은 2018년까지 러시아가 기술 및 인프라 현대화, 사회국가제도 현대화, 경제의 효율성 및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한 과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러시아정부 5대 우선과제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1) 국가경쟁력 및 노동생산성 제고, 국내해외시장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2) 사회영역의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 3) 서민주택 및 기본공공 서비스 제공, 4) 국가경영의 효율성 및 정부서비스질 제고, 5) 균형지역발전 입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극동지역 발전을 위해 극동개발펀드가 참여하는 10여 개의 대형투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